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는 사회보장급여의 직권 신청 >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59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1.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59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6. 29.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 신청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은 심신미약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생계급여 등의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원 전체의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3항).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장기관 업무담당자의 여러 차례 신청 권유에도 지원대상자가 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생계의 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② (생략)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 대상자가 <u>심신미약 또는 심신 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 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심신미약·심신상실</u> <u>또는 여러 차례 신청을 권유하</u> <u>였음에도 급여를 신청하지 아</u> <u>니하여 생계의 유지가 현저히</u> <u>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u> <u>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u> ----- ----- ----- ----- ----- -----.-----

④ ~ ⑥ (생 략)	----- -----.
-------------	-----------------

2. 검토의견

□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제1항1)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서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 제5조2)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도 친족,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도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수급자격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급여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³⁾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권유를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생활고가 지속되면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자에게 여러 차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권유하였음에도 지원대상자가 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생계의 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울산 일가족 사망사건’에 울주군청 “수 차례 복지 신청 독려했는데 스스로 거부”(경향신문, 2026. 3. 19.,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91157001>)

□ 사회보장급여는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자에게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급여 수급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지만, 수급자가 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차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의 직권 신청이 이루어지더라도 보장기관은 법 제7조4)에 따른 수급자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의 가구 상황, 소득·재산, 부양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여야 하는데,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법인·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전히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의 실질적 제약은 해소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정안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이 필요함에도 본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직권신청이 어려워 지원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는 점에 있는데,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신청을 하더라도 이후 수급자격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와의 접촉 및 의사 확인 절차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공공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26호,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842호)은 지원대상자 등의 동의 없이도 법 제8조제1항5)에 따른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⁶⁾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업무담당자가 급여 신청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 동의 없이 직권신청하여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청 권유 횟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대상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여러 차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직권 신청의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사회복지급여 신청에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문 의 처

02)6788-5498

정보(이하 이 조에서 “보험정보”라 한다)

6) 소병훈의원안(제2218296호), 안상훈의원안(제2218326호), 이수진의원안(제2218940호), 남인순의원안(제2219842호)